

의안 번호	1286	【중구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6. 11. 11.(금)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6. 11. 16.(수)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6. 12. 20.(화)

2. 제안이유

-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2015. 12. 31.) 및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3. 10.)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중구 중앙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 같은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울산광역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원도심 强·小경제로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실현
- 나. 위치/면적 : 중구 중앙동 일원/348,000㎡
- 다. 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 라. 사업비 : 18,200백만원(국 9,100, 시 4,550, 구 4,550)
- 마. 주요내용 : 4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

- 강·소(強·小)경제 구축사업 : 3개 사업
- 창조거점 활성화사업 : 3개 사업
- 도심보행네트워크 기반구축 : 4개 사업
- 민관산학협력 도심공동체 활성화 : 3개 사업

4. 관련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5. 위치도



6. 검토의견

- 별도의견 없음.

〈 관 계 법 령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